

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공유재산 변상금 채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14. 3. 26. ~ 2014. 4. 9.

3. 공고대상

연도	과목	대 상 자		변상금 부과내역			반송 사유
		성명	주소	동	지번	변상금(원)	
2010	공유재산 변상금	임재규	충남 당진시 석문면 해양구지길 217	석문면 통정리	1240	1,521,160	이사불명

4. 공고내용

- 공유재산 변상금 채납분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정통지 및 채납고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,
- 공고기간 내 당진시청 회계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경우 즉시 재산압류 해제가 가능하며,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지방세기본법」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절차 등으로 강제 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5. 문의사항 : 당진시청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(☎041-350-3421)

2014. 3. 26.

당진시

